

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전문업자의 원도급대상공사범위 상향조정 →

건 설교통부는 지난 3월 2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제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4대 보험료의 원가반영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영업범위 제한을 단계적으로 통합·조정해나갈 방침이라면서, 개정안은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 건설공사를 수주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수료의 적정 공사원가반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공사수행과정에서 보험료 등을 실제 납부했는지를 확인해 초과지급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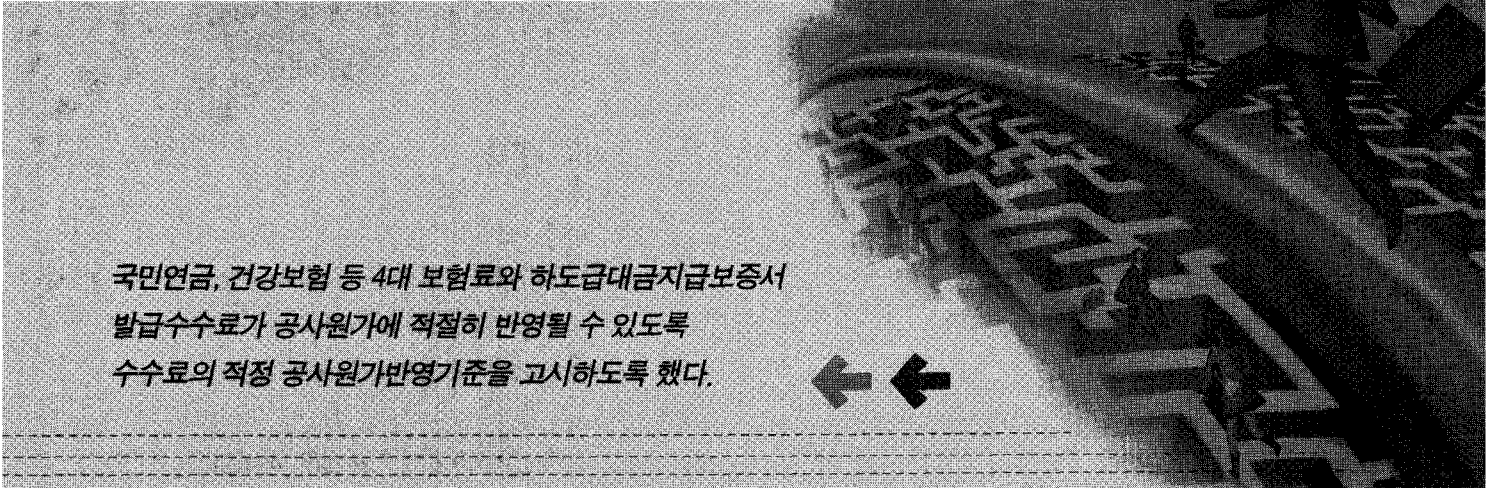
4대 보험료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범위를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1억원 미만이던 복합공사 원도급 범위를 2억원 미만으로 늘려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대상공사는 1조4천억원 규모가 추가되며, 2008년 1월까지 3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이어서 전문건설업자의 수주물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4개월간의 영업정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으며, 조정사업과 조정식재공사업의 조정수목 재배용 포지 2만5천㎡ 이상 보유의무 폐지를 백지화했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수주 후 일괄하도급 등의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수료의 적정 공사원가반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직접시공계획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시공 공종과 하도급 공종을 분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게 함으로써 입찰브로커의 활동 영역을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기술능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지로, 국내공사 중 3분의 1 가량이 직접시공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건설업통계연보로 볼 때 30억원 미만 공사는 국내공사 93조원 중 33%인 30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시공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무자격 부실업체나 실제로 공사수행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페이퍼컴퍼니들이 공사를 수주한 채 전혀 시공을 하지 않고 일괄하도급 등의 불법거래를 일삼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판단,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금액 중 일정비를 이상은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토록 함으로써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를 시장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함께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을 현재 7개 업종에서 상하수도공사업과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여 11개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지금은 철강재설치, 준설, 삭도, 승강기, 가스시설, 난방,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이 겸업허용 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며 나머지 업종은 제한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이처럼 개정되면 공사수주 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일반·전문건설업간 영역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